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302호
----------	-------

2015. 12. 21.(월)
정책복지 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11월 23일
-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4일

다. 상정일자 : 2015년 12월 16일

-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15.7.1.)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개정
- 위원회 기능, 구성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추가, 보완
- 관련조례 개정(부칙) :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등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015.7.1.)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함.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1) 기존 ‘사회복지위원회’ 명칭을 ‘사회보장위원회’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하고,
 - 2) 안 제2조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 3) 안 제3조에서,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임명·위촉 대상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 위원회 구성원 중 “충청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존치함.
 - 4) 회의소집을 위해 해당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통지할 경우, 기존 7일 전까지였던 통지 기간을 5일 전까지로 축소하고, 통지 방식도 서면으로 규정하였음.
 - 5) 또한 부칙 조항으로,
 -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제11조의2제2항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토록 한 것으로 내용

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다른 조례에 명시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사회 보장위원회”로 동시에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동 조례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와 「자활기금 조례」 개정만을 명시하였는데, 아래 제시된 조례 4건의 개정도 명시토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①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6조
 - ②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③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④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2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수 정 안 요 지

가. 수정이유

- 다른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기 위한 부칙 규정(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제외된 조례를 포함하기 위함.

나. 수정주요내용

- 동 조례안 부칙 제3조에 명시된 2건의 조례 외에 4건의 조례를 추가함.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302 호
----------	---------

발의연월일: 2015. 12. 16.(수)
발 의 자: 임 병 운 의원 등
(박봉순 위원장)

□ 수정이유

- 동 조례의 개정에서 다른 조례들에서 사용된 용어를 동시에 정비하기 위한 부칙 규정(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제외된 조례를 포함하기 위함.

□ 수정주요내용

- 동 조례안 부칙 제3조에 명시된 2건의 조례 외에 4건의 조례를 추가함.
 - ①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6조
 - ②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③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④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2조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③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
- ④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
- 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
- ⑥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부칙</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 략)</p> <p><u><신 설></u></p> <p> </p> <p><u><신 설></u></p> <p> </p> <p><u><신 설></u></p> <p> </p> <p><u><신 설></u></p>	<p>부칙</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p> <p>④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 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p> <p>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p> <p>⑥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p>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을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제1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5조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수 행하는데”를 “수행하는데”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을 “소집할 경우”로, “7일”을 “5일”로, “통지 및 송부하여야”를 “서면으로 알려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을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 관련 담당사무관”을 “사회보장업무 담당사무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

②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

③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

④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 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

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

⑥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로 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u>	<u>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복지사업법</u>」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u>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의</u>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제40조 — <u>사회보장위원회의</u> -----.</p>
<p>제2조(기능) <u>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u></p> <p>2. 「<u>사회복지사업법</u>」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u>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p> <p>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u>」 제29조제1항 및 「<u>의료급여법 시행령</u>」 제7조제2항에서 정한 <u>사항</u></p> <p>4. 그 밖에 <u>충청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u>사항</u></p>	<p>제2조(기능) <u>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u> -----</p> <p>-----.</p> <p>1. <u>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u></p> <p>2. <u>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u></p> <p>3. <u>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u></p> <p>4. <u>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u></p> <p>5. 그 밖에 <u>위원장 또는 충청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u>호선한다</u>.</p> <p>③ 위원은 다음 <u>각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2. <u>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u> 3. <u>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u> 4. <u>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u> 	<p>제3조(구성) ① ----- ----- 40명 -----, <u>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u> -----.</p> <p>② ----- - <u>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 <u>각 호의</u> ----- ----- ---또는 위촉한다. 다만,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u>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u> 2. <u>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u> 3. <u>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u> 4. <u>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u>

현행	개정안
<p>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p> <p>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p> <p>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p> <p>8. · 9. (생략)</p>	<p>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p> <p>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p> <p>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8. · 9.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② <u>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u></p> <p><삭제></p>
<p>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 위원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u>사회복지사업법</u>」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u>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u>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p> <p>3. (생략)</p>	<p>2. 법 제40조제4항 ----- ----- ----- <u>수행하는데</u> ----- -----</p> <p>3. (현행과 같음)</p>
<p>제7조(회의 및 의사)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장이 회의를 <u>소집하고자 할 때에는</u> 회의 개최일 <u>7일</u>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u>통지 및 송부하여야</u>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 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⑤ (생략)</p>	<p>제7조(회의 및 의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소집할 경우</u> ----- <u>5일</u> ----- ----- <u>서</u> <u>면으로 알려야</u>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u>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u>으로 하고, 서기는 <u>사회복지 관련 담당사무관</u>이 된다.</p> <p>②·③ (생략)</p>	<p>제9조(간사 및 서기) ① ----- ----- <u>사회</u> <u>보장업무 담당과장</u> ----- ----- <u>사회보장업무 담당사무관</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복지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복지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복지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복지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사회복지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도의 사회복지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복지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복지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

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